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.

발 의 자 : 권칠승 · 이용선 · 김영환
김 윤 · 문금주 · 장종태
윤준병 · 남인순 · 이상식
손명수 · 박균택 · 한민수
이연희 · 임미애 · 김남희
박해철 · 이성윤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군·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·변경·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·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급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

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99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”을 “거짓 답변을 한 경우 또는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되었으나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실태조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(아동에 대한 대면조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아동에게 거짓 답변을 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아동수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아동수당의 지급 정지) ① (생 략)	제13조(아동수당의 지급 정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 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, 조사 · 질문을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<u>거짓 답변을 한 경 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 지할 수 있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거짓 답변을 한 경 우 또는 수급아동이 「아동복 지법」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 되었으나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실태조사를 거부 · 방해 · 기피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(아동에 대한 대면조사를 거부 · 방해 · 기피하거나 아동에게 거짓 답변을 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아동수당----- -----.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